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6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조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 시점만 명시하고 있음.
- 나. 이에 수사기관에 법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5. 6.~5. 26.)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처분 불복기간”을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이한진(02-2133-2344)